

충청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1조 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시험 및 검사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제 1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품질시험 및 검사수수료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고,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으로 정한다.

제 2조 제 2항중 “현장 조사 및 시험은”을 “현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”로 한다.

제 3조 (징수방법) 제 1항중 “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의뢰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더라도 반환하지 아니한다”를 “이미 시험에 착수한 후 의뢰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”로 함.

제 4조 제 1항중 “시험의뢰자는 시험결과”를 “품질시험 및 검사의뢰자는 성과표”로 하고, 동조 제 2항중 “도로관리사업소장”을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.

제 5조중 “공용조사 및 시험과”를 “공공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품질시험과 검사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
제1조 (목적) -----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에 건설공사와 건축공사 자재의 선정, 관리 및 검사시험을 의뢰하는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의 금액과 이의 징수방법을 -----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시험 및 검사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수수료) ① 수수료를 징수할 시험종목과 그 요금은 “건설공사품질시험규정시행규칙”에 따른다.	제2조(수수료) ① 품질시험 및 검사수수료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고, 충청북도건설공사 품질시험시행규칙으로 정한다. ② 현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요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. (현행과 같음)
② 현장조사 및 시험을 ----- ----- ----- -----	② 현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요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. (현행과 같음)
제3조(징수방법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일체 ----- ② (생략)	제3조(징수방법)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시험을 의뢰하는 자로부터 징수하고 이미 시험에 착수한 후 의뢰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 ② (현행과 같음)
제4조(시험이용의 제한) ① 시험의뢰자는 시험결과 ----- ----- ----- ----- ② ----- ----- 도로관리사업소장 -----	제4조(시험이용의 제한) ① 품질시험 및 검사의뢰자는 성과표를 품질보증 및 상품선판 기타 목적으로 대외에 발표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.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장은 그 시정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현 행	개 정
<p>제5조(수수료의 감면) ----- ----- 공용조사 및 시험과 ----- ----- -----</p>	<p>제5조(수수료의 감면)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공공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와 그 밖에 공익상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p>